

工產品品質検査基準

工業振興庁에서는 지난 9月 15日과 9月 23日에 告示 第 82-1355号(공산품 품질검사기준), 告示 第 82-1432号(공산품 품질검사기준), 告示 第 82-1434号(공산품 품질검사기관 지정기준 중 개정)을 告示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업진흥청 고시 제 82-1355호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개정”

공업진흥청 고시 제 80-1246호 ('80. 8. 5)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중 12. 카세트 테이프 품질검사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1982. 9. 15.

공 업 진 흥 청 장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카세트 테이프 품질검사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의 검사방법 및 기준 중 3) 주행성능의 표 2, 5)의 (1) 동작바이어스전류, 6) 내구성, 7) 내열 및 내한성, 8) 내습성, 3.표시 ② 및 4. 검사방법 중 1), 2), 3), 4), (별표 1), 5)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행성능

표 2

단계	주 행 내 용	주행회수
1	빨리돌리기 20초, 되감기 10초 의 조작, 빨리돌리기 20초	1 왕복
2	정속도 회전 3분, 되감기 10초 의 조작	1 왕복

5) 전자변환 특성

(1) 동작바이어스 전류

공시테이프에 바이어스 전류를 증가시키면서 규정압력이하의 일정한 레벨로 1,000Hz 신호를 녹음하고 그 재생출력의 최대치에서 바이어스 전류를 측정하여 규정 바이어스 전류에 대한 차를 구해 백분율로 나타내며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은 ±20% 이내이어야 한다.

동작바이어스 전류차에 대한 백분율

$$= \frac{\sqrt{a_{MBM}} - \sqrt{asbs}}{\sqrt{asbs}} \times 100 (\%)$$

여기서

\sqrt{asbs} : 기준테이프의 바이어스 전류 최대치

$\sqrt{a_{MBM}}$: 공시테이프의 바이어스 전류 최대치

다만, 최대치의 결정은 아래 그림 5의 바이어스 전류 대 재생출력 특성곡선의 바이어스 전류치로 부터 \sqrt{ab} 에 의해 구한다.

다만 기준테이프는 BASF 제 QP-1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크롬테이프의 기준 테이프는 BACF 제 Tp-18Cr O,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6) 내구성

내구성 시험은 완제품에 대하여 모델 별 규격 별로 3월마다 1회이상 사전검사 (국내 생산품에 대하여는 사전 검사전)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시테이프에 3 KHz의 신호를 녹음하여 데크로 10회 정상 주행시키며, 시험 전후 와우후릿터를 측정하여 0.5%이하이어야 하고 테이프가 절단 되거나 떨어짐없이 주행이 원활하여야 한다.

공지사항

7) 내열 및 내한성

내열 및 내한성 시험은 완제품에 대하여 모델별 규격별로 3월마다 1회이상 사전검사(국내 상품에 대하여는 사전검사전)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시테이프에 3KHz의 신호를 녹음하고 테이프를 다음 시험온도로 6시간 방치한 후 즉시 와우후랏터를 측정 0.5%이하이어야 하며 실용상 지장이 있는 외관 불량 및 주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시험온도 : $40^{\circ}\text{C} \pm 2^{\circ}\text{C}$, $-10^{\circ}\text{C} \pm 2^{\circ}\text{C}$

8) 내습성

내습성 시험은 완제품에 대하여 모델별 규격별로 3월마다 1회이상 사전검사(국내 생산품에 대하여는 사전검사전)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공시테이프에 3KHz의 신호를 녹음하여 테이프를 온도 $40^{\circ}\text{C} \pm 2^{\circ}\text{C}$ 상태습도, $90\% \pm 5\%$ 의 상태에서 6시간 방치한 후 와우 후愠터를 측정 0.5% 이하이어야 하며 실용상 지장이 있는 외관불량 및 주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표시

②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4. 검사방법

1) 로트의 구성

1회 검사신청량 중 동일 모델, 동일 규격별로 로트를 구성한다.

2) 시료채취방법

KSA 3151(랜덤 샘플링방법)에 따른다.

3) 검사방식

KS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의 보통 검사 1회 샘플링 검사 방식에 의한다.

4) 검사항목 및 검사조건

(별표 1)

검사항목	검사방식
결모양	일반검사수준 G-1, AQL=2.5%
치수	특별검사수준 S-1, AQL=2.5%
주행성능	특별검사수준 S-1, AQL=2.5%
기계적성능	특별검사수준 S-1, AQL=2.5%

전자변환특성	특별검사수준 S-1, AQL=2.5%
내열 및 내한성	별표 2에 의함
내습성	"
내구성	"
내진동성	"
내충격성	"

5) 판정

검사항목이 합격하였을 때 해당로트를 합격으로 판정한다.

(별표 2)

샘플링개수	합격판정개수	불합격판정개수
2	0	1

공업진흥청 고시 제 82-1432호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제정”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6조 및 동법시행령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 면도기의 품질검사기준을 별지와 같이 제정 고시한다.

1982. 9. 23.

공 업 진 흥 청 장

부칙 : (시행일) 이 고시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면도기검사기준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동기 또는 전자진동기로 구동되는 전기면도기(이하 면도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상품은 제외한다.

2. 외관

현저한 흠, 거치름, 변형, 도금불량 등 기타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성능

가. 시동

KSC 9616에 따른다.

공지사항

나. 온도상승

: KSC 9616에 따른다.

다. 절연저항

KBC 9616에 따른다.

라. 내전압

KSC 9616에 따른다

마. 잘라지는 정도

KSC 9616에 따른다.

바. 소음

KSC 9616에 따른다.

사. 기계적 강도

KSC 9616에 따른다.

아. 구동부의 내구성 시험

KSC 9616에 따른다.

자. 내습 절연성

KSC 9616에 따른다.

차. 외곽 난연성

KSC 9616에 따른다.

비고 : 1) 3의 다, 라, 자 및 차항은 충전식 전기면도기, 교류충전지식 전기면도기, 및 충전 전전지식 면도기에 한한다.

2) 3의 사, 아, 자 및 차는 완제품에 대하여 모델별, 규격별로 3월마다 1회 이상 사전검사전(수입상품에 대하여는 사전검사시)에 실시한다.

4. 구조

가. 보통사용 상태에서 위험이 생길우려가 없는 것으로 현저한 진동이 없고 동작이 원활할 것.

나. 형상이 똑바르고 부품의 결함이 없이 조립이 양호할 것.

다. 사용후에 청소하기가 쉽고 기체의 내부에 털등이 들어가지 않을 것.

라. 전자가 용이하게 착탈이 되고 진동등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마. 면도기의 칼은 보통 사용상태에서 촉감이

좋고 텔이 안전하게 깍아질 것.

바. 보관상태에서 칼을 보호하기 위해 캡 또는 케이스를 구비하여야 하며, 또 보관상태에서 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고 끓고 하는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사. 기체의 일부 또는 부속품을 부착하고 또는 떼어내는 것에 있어서는 그 동작이 쉽고 확실히 또 안전하게 되는 것일 것.

아. 충전부 상호간 또는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고정부분은 통상 사용 상태에 있어서 뜨거워질 우려가 없을 것.

자. 스위치는 아아크로 인하여 단락하지 않고 또는 지락할 우려가 없을 것.

차. 금속세의 뚜껑 또는 상자중에서 스위치를 개폐하였을 때 아아크가 도달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내 아아크성 전기 전연물로 할 것.

가. 스위치의 개폐조작 또는 개폐상태를 문자, 기호 또는 색으로 보기 쉬운곳에 표시할 것.

5.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할 사항이 있을 때는 기체, 명찰, 상자 또는 취급 설명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6. 시험방법

KSC 9616의 해당 방법에 따른다.

7. 표시

정격전압(V), 세조년 또는 세조번호, 제조사명 또는 그 약호를 보기 쉬운곳에 잘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 검사방법

가. 로트의 구성

1회 검사 신청량중 동일모델 동일규격별로 로트를 구성한다.

나. 시료채취방법

KS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다. 검사방식

KRA 3109(개수조정형 샘플링 검사)의 보통검사 1회 샘플링 검사 방식에 의한다.

공지사항

라. 검사항목 및 검사조건

검사항목	검사방식
외관	G-1, AQL 2.5%
구조	G-1, AQL 2.5%
시동	G-1, AQL 2.5%
절연저항	S-1, AQL 2.5%
내전압	S-1, AQL 2.5%
온도상승	표 1
잘라지는 정도	표 1
소음	표 1
기계적 강도	표 2
구동부의 내구성시험	표 2
내습 절연성	표 2
외곽난연성	표 2

(표 1)

샘플링개수	합격으로하는불량수(Ac)	불합격으로하는불량수(Re)
2	0	1

(표 2)

샘플링개수	합격으로하는불량수(Ac)	불합격으로하는불량수(Re)
1	0	1

마. 판정

검사항목이 합격하였을 때 해당로트를 합격

으로 판정한다.

공업진흥청고시 제 82-1434호

공산품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중 개정

당청고시 제 81-1043호(81. 7. 20), 공산품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2. 9. 23.

공업진흥청장

별표중 “4. 전기기기”난의 “녹화 및 녹음용 자기테프” 다음에 별지와 같이 추가한다.

부칙 : 이 고시는 고시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검사기관 지정기준

부분별	검사제품	검사시설
4. 전기기기 ② 전기면도기		1. 전압계 2. 전류계 3. 전력계 4. 전원공급장치 5. 소음측정기 6. 절연저항계 7. 열전온도계 8. 확대경 9. 기계적 강도 시험기 10. 내구성 시험장치 11. 내전압 시험기